



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

수신자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주관/참여기관 연구책임자
(경유)

제 목 정보통신·방송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인정기준 등 안내

1. 관련

- 가. 정보통신·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3조(사업 결과의 보고), 제34조(사업 결과의 평가)
- 나. 정보통신·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6조(연차평가), 제48조(최종평가)

2.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신뢰성 확보 및 연구실적 검증 강화를 위해 논문 및 특허 등에 대한 연구성과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, 기술개발사업 연구수행 및 실적 보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목적 : 논문, 특허 등 ICT R&D사업의 주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

나. 주요내용

- 논문/특허의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 등을 수행기관에게 사전 배포·안내 실시
 - * 연구자 대상 협약 설명회 등 추진시 안내 및 교육 병행 추진
-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시 과제 담당자가 성과지표 및 결과보고서의 실적치를 비교 확인 후,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및 검토
 - * 검토내용 및 결과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반영
- 연차·최종 보고서 제출시 연구성과에 대한 자기점검표 체크를 통해 수행기관 자체검토 강화

다. 연구성과 인정기준 : 붙임 1 참조

붙임 : 1. 연구성과 인정기준(안내문) 1부.
2. 보고서식 1부. 끝.

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



★담당

11/09
오세윤

박준성

홍승배